
화장품 비건(VEGAN) 표시 · 광고 안내서

안내서 제 · 개정 이력

화장품 비건(VEGAN) 표시 · 광고 안내서

제 · 개정번호	승인일자	주요 내용
	2025.	화장품 비건(VEGAN) 표시 · 광고 안내서 제정

본 안내서는 화장품의 ‘비건’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, 표시 · 광고하는 자에게는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. 아울러 본 안내서는 「화장품 표시 · 광고 자율 심의기구」 광고자문위원회의 광고 자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.

화장품 비건(VEGAN) 표시·광고 안내서

I. 목적

이 안내서는 화장품의 '비건'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'비건(VEGAN)'(이하 "비건"이라 함) 표시·광고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, 표시·광고하는 자에게는 '비건' 표시·광고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II. 적용 범위

이 안내서는 '비건'을 표시·광고하는 화장품에 적용된다.

III. 판단 기준

1] 정의

'비건' 화장품이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화장품을 말한다.

1.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
2. 「화장품법」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
3. 「화장품법」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

2] 원료 기준

동물성 원료 및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동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미생물(박테리아, 효모, 균류 등)로 공정 과정을 거친 원료는 사용할 수 있다.

* 예시 : 발효 용해물, 추출물

③ 제조·관리 기준

비건 화장품의 제조 중에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예를 들어, 비건이 아닌 제품과 비건 제품을 같은 제조 설비에서 제조하는 경우 비건 제품의 제조 전 기계, 장비, 기구, 접촉면 등을 충분히 세척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④ 표시·광고

완제품이 제①, 제② 및 제③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'비건' 화장품으로 표시·광고할 수 있다.

완제품이 아닌 일부 특정 원료만으로는 제①, 제② 및 제③의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'비건' 화장품으로 표시·광고할 수 없다.

「화장품법」15조의2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한 제조·수입 화장품의 유통·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,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'동물실험 미실시'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·광고 할 수 없다.

이 안내서는 화장품법 제10조, 제13조,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, 제22조, 제23조, 별표 5와 관련하여, 화장품의 용기·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모든 표현에 적용한다.

⑤ 실증 구비 자료

'비건'을 표시·광고하는 화장품은 제①, 제② 및 제③의 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.